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525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25초기266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 가. 나. A

2. 가. 나. B

3. 가. 나. C

검 사 김원학(기소), 정수희, 김성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혜경(피고인 A,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조이황(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D

판 결 선 고 2026. 6.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3. 3.경부터 대구 일대에서 운영 중이던 소위 'E계'의 설계자이자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대구 일대에서 위 E계를 함께 시작하며 E계의 총무를 맡았으며, 피고인 C는 위 E계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23. 8.경부터 E계의 최상위자리인 4자리 계주를 맡아 피해자 D과 피해자 F을 모집한 사람이다.

E계는 독립적인 'OO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OO방에는 1명의 계주와 2개 조가 소속되어 있고 OO방 1개 조는 S자리 9명, A자리 3명, B자리 1명으로 구성되어 위 계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최초 114만 원을 계주에게 납입하면 S자리 회원이 되고 위 114만 원을 납입 받은 계주는 신규 회원을 데려온 회원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전산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내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만 원을 송금한 뒤, 남은 98만 원을 같은 조 A자리 회원 3명에게 각 11만 원, B자리 회원 1명에게 15만 원, 계주 본인에게 50만 원을 분배하는 구조이다.

E계는 S자리 회원 18명이 모두 채워질 경우 모두 A자리로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하나의 방이 3개의 방으로 분방되고 S자리 회원 18명은 6명씩 각 방의 A자리에 위치하며, 분방된 방의 S자리에 다시 18명이 모두 채워지고 A자리 회원이 2명 소개 시 A자리 회원은 B자리로 승격되며, 또다시 S자리 18명이 모두 채워지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4자리 계주로 올라가는 형태로, 계주는 하부에 18명 박스 3개를 배정받으므로 2,750만 원(=51만 원×54명)을 수령 후 졸업하게 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23. 4.경 위와 같이 'E계'를 설계하고,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매주 강의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총무 역할을, 피고인 C는 '4자리'(계주)로서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3. 8. 12.경 대구 수성못 부근의 카페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E계의 운영원리에 대하여 설명하며 "E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4만 원만 내면 된다. 계주가 되면 1,2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계주인데 18명에게 받은 돈은 내가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계는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용 방식이었으므로 신규 회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인바, 당시 신규 회원이 계속 유입된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그 외에 별도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 A은 E계에서 수신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14만 원을 받더라도 추후 약속한 수익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8. 12.경 피고인 C가 지정한 J 명의의 K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48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3. 8. 12.경부터 2023.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2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4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송금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서, 'P' 조직도 등), 수사보고서(다단계판매조직 'E' 관련 관계자 진술 검토 및 구조 정리), 수사보고서(E계 관련 계좌 정리: 계주 14명 등 관련자 192명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D과 통화: 추가 고소장(人) 제출 불가], 수사보고서(피의자 C - 지급받은 계금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들의 유선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Q의 유선진술)

1. 고소인 D 명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3 생략) 사본, 고소인 D의 자녀 R 명의 H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사본, 고소인 F 이용 S교회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략) 거래내역

1. E(계) 등록카드(D), E(계) 등록카드(F), C 제출 'T' 조직도, C 제출 'P' 조직도, C 제출 'U' 조직도, A 제출 'E<契> 설명서', E 지출내역 및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01. 유사수신행위법위반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B, 피고인 C에 한하여)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순위 회원들로부터 수신한 돈으로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의 운영으로 돈을 편취하는 한편,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특별한 수익구조 없이 계속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일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과 금융질서를 교란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른바 'E계'는 특정 인원을 대상으로 한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전통적인 '계'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앞선 회원들에게 돈을 챙겨주는 전형적인 다단계조직이나 유사수신행위조직 형태에 더 가깝다.

피고인 C는 피해자 D이 계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나, E계 설명서에는 오히려 '4자리 계원은 앞으로 많은 돈을 받을 일만 남아있는 자리로서 이런 계원이 앞으로 받을 모든 걸 포기하고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같은 라인에 있는 4자리 계원이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4자리 계원 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 4자리 계원, 즉 계주에 있는 사람은 로또 맞은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제57번 제11쪽). 위 E계 설명서는 '위험성이나 부담이 없는 계'라거나 '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으니 편히 소개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되어 있을 뿐,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위험성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구조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추가 가입을 독려하는 것이어서 직접 가입을 권유하는 피고인 C의 단독행위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구성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E계'를 설계하여 창립한 피고인 A이나 대구 지역 창립 멤버이자 총무를 맡고 있는 피고인 B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거액이라고 할 수 없고, 이미 소개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412만 원, 피해자 F에게 3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에 대하여도 그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편승한 측면이 있으므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들도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나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이 만연히 수익을 얻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나름대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A은 오래 전인 1995년경과 1997년경 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처벌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건강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C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권고한 형량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환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7-16

범죄일람표

연번	일자	금액(원)	피해자	송금 계좌	편취 수단
1	2023.8.12.	1,140,000	<삭제처리>	<삭제처리>	<삭제처리>
2	2023.8.20.	2,000,000			
3	2023.8.21.	280,000			
4	2023.8.30.	2,280,000			
5	2023.9.21.	150,000			
6	2023.9.22.	4,560,000			
7	2023.10.23.	1,000,000			
8	2023.10.23.	3,420,000			
합계		14,830,000			

끝.